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October, 2024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법률 뉴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4 년판)를 발표하였습니다. 2024 년판은 전국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조치는 기존의 31 개에서 29 개로 줄어들었으며, “출판물 인쇄는 반드시 중국 측이 다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항목과 “중약재 가공기술(짜기, 볶기, 뜨기, 굽기 등) 조제 기술의 적용 및 중약 제조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금지”라는 두 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제조업 분야의 외자진입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퇴직연령 연장 실시에 관한 결정
02.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
03.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에 관한 권리침해 책임의 해석 (1)
04.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
05. 신디케이트 대출업무 관리방법

■ 법률 뉴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4 년판)를 발표하였습니다. 2024 년판은 전국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조치는 기존의 31 개에서 29 개로 줄어들었으며, “출판물 인쇄는 반드시 중국 측이 다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항목과 “중약재 가공기술(짜기, 볶기, 뜨기, 굽기 등) 조제 기술의 적용 및 중약 제조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금지”라는 두 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제조업 분야의 외자진입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번 2024 년 9 월 6 일 상무부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외상투자 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이하 "외상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라 약칭함)는 지분 요구, 임원 요구 등 외상투자 진입허가 방면의 특별관리조치를 통일적으로 열거한다.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경내외 투자자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2. 경외투자자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원의 신분으로 투자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3.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경우, "외상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외투자자에 대해 "외상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 내의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나 "외상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허가 및 기업등기등록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과 관련된 경우, 관련 심사비준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다. 투자에 지분비율 제한을 둔 분야에 대해서는 외상투자 동업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5.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경우, 특정 외상투자는 "외상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 중 관련 분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외상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경내 기업이 경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상장을 하는 경우, 국가 관련 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하고, 경외 투자자는 기업 경영 관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지분 보유 비율은 경외 투자자의 경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7. 경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경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회사가 관련 회사의 경내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외상투자, 경외투자, 외환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외상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문화, 금융 등 분야와 행정심사, 자격조건, 국가안전 등 관련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9. "내륙지역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후속 협의, "내륙지역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후속 협의,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및 그 후속 협의,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이 경외 투자자의 진입에 보다 우대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자유무역시험구 등 특수경제구역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에 대해 보다 우대적인 개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0. "외상투자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관련 부문과 함께 해석을 책임진다.

11. 2021년 12월 2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발표 한 2021년판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4년 11월 1일부터 폐지한다.

2024년 11월 1일부 시행 예정인 新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대상 금지, 제한 업종은 농수축산업, 채광업, 에너지, 도소매, 운송, 과학기술, 의료, 문화교육 등 11개가 포함됩니다.

<2024년판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 | 업종/조항 수 | 규제 내용 |
|----|-------------------------------------|--|
| 1 | 농업·임업·목축업 ·어업 (4) | - 밀,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종자개발 생산 (제한) - 희귀 우량품종, 유전자 변형 품종 개발 및 생산 (금지) - 중국 수역 수산물 포획 (금지) |
| 2 | 채광업 (1) | -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 탐사/채굴/선광 (금지) |
| 3 |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 및 공급업 (1) | - 원자력 발전소 건설/경영 (제한) |
| 4 | 도소매업 (1) | - 담배류 도소매 (금지) |
| 5 |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업 (4) | - 수상·공공항공 운송회사, 민용공항 건설/경영 (제한) - 교통 관제탑 건설/운영, 서신의 중국 내 우정업무 (금지) |
| 6 | 정보전송, 소프트웨 어 및 정보기술 서 비스업 (2) | - 통신회사 (제한) - 인터넷 정보전파/콘텐츠 관련 업무 (금지) |
| 7 | 임대와 비즈니스 서 비스업 (3) | - 법률 자문, 중국 내 로펌 파트너, 사회조사 (금지) - 시장 조사 (제한) |
| 8 | 과학연구 및 기술서 비스업 (3) | -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 치료 기술 개발 및 응 용, 인문학과 연구기관, 지리 측량 및 지질 조사 (금지) |
| 9 | 교육 (2) | - 유아, 고등 교육기구 (제한) - 의무, 종교 교육기구 (금지) |
| 10 | 위생과 사회업무 (1) | - 의료기구 (제한) |

| | | |
|----|------------------|---|
| 11 | 문화, 체육 및 오락업 (7) | - 언론, 콘텐츠 제작, 문화재 경매, 판매 및 국유문물박물관, 문화예술공연단체 (금지) |
|----|------------------|---|

[출처: 중국 상무부]

■ 최신법률법규 (별첨) ■

- 01. 퇴직연령 연장 실시에 관한 결정 
- 02. 금융리스회사관리방법 
- 03.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에 관한 권리침해 책임의 해석 (1) 
- 04.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 
- 05. 신디케이트 대출업무 관리방법 

범무법인[유] 지평